

2026 이패스 민법총칙 객관식 교재 정오 및 추록

- 이동건 교수 -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12p	1번 문제 5번 해설	<p>⑤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이어야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(106조 참조). 그리고 재판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.(삭제)</p>	<p>⑤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이어야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(106조 참조).</p> <p>*추가 설명 판례원문을 소개합니다.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. (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0다3231)</p>
12p	2번 문제 5번 해설	<p>⑤ 모두 옳바르다. ㄱ. ○ 관습법=사회의 거듭된 관행+법적 확산→법적 규범 ㄴ. ○ 판례 ㄷ. ○ 사실인 관습=단순한 관행→법적 규범이 아닌 의사해석의 기준</p>	<p>② 대법원은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(대결2007카기134),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(2009헌바129) 그래서 ②도 정답으로 한 것 같다. ④ 사실인 관습은 법칙이 아니다.</p>
32p	4번 문제 보기 5번	<p>⑤ 갑은 생전에 태아인 병에게 증여를 할 수 없다.</p>	<p>⑤ 갑은 생전에 태아인 무에게 증여를 할 수 없다.</p>
113p	7번 문제 1번 해설	<p>①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후에 할 수 있는데(138조 참조)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추인할 수 없다.</p>	<p>① 무효인 계약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후에 할 수 있는데(139조 참조)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추인할 수 없다.</p>
248p	4번 문제 보기 4번	<p>④지문 삭제 ④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</p>	<p>사유 : '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'는 판례는 최</p>

		한 것이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	근에 폐기됨(대법원 2025. 7. 24.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). 즉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.(p252 1번 해설 참조)
249p	7번 문제 보기 3번	③지문 삭제 ③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500만 원을 갚은 경우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	사유 : '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'는 판례는 최근에 폐기됨(대법원 2025. 7. 24.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). 즉 단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.(p252 1번 해설 참조)
63p	5번 문제 정답	정답 : 3번	정답 : 2, 3번 복수정답 2번 지문의 법원이 틀린 지문.
192p	3번 문제 해설	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(판례).	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(판례).